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46 발의연월일: 2024. 9. 20.

발 의 자:정청래·이훈기·추미애

박성준 • 이병진 • 강준현

김재원 · 김현정 · 모경종

신영대 · 김윤덕 · 황명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해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수십만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도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시민 들의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특히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 교사, 여군 등이 포함돼 있지만 온라인에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라는 이름의 카페가 등장하는 등 가해자들은 '잡힐 리 없다'며 수사기관을 조롱하며 범죄를 이어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사회범죄가 되고 있음.

이를 수사하기 위해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수사 전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야간이나 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피의자가 사용하는 SNS 계정 발견 후 승인을 받을 때까지의 시간 사이에 계정이 삭제되면서 수사 단서를 잃는 수사에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임.

이에 불법·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접촉·수사를 위해 긴급한 경우 우선 수 사에 착수하고 착수로부터 48시간 내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해 딥페 이크 범죄를 적시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 의3제1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우선 수사에 착수하고 착수로부터 48시간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3(아동・청소년대상 디	제25조의3(아동・청소년대상 디		
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	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		
차)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	차) ①		
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			
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			
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u><단서</u>			
<u>신설></u>	급한 경우 우선 수사에 착수하		
	고 착수로부터 48시간내에 승		
	<u>인을 받을 수 있다.</u>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